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596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폭력방지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 바.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를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아동여성 안전서비스망 예산 4,945천원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18. ~ 2021. 4. 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과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측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